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71호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2.07.19)으로 지자체로 위임되어 있던 행정처분권한을 일부 환원함에 따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건설 관련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등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 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 및 위원 등의 역할
- 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의 및 심의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로 2023년 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4586 팩스 044-201-5546)